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

목 차

제1조 목적6-1-2
제2조 적용범위6-1-2
제3조 정의6-1-2
제4조 검사업무 구분6-1-2
제5조 검사업무 시행6-1-3
제6조 일일결산6-1-3
제7조 검사실적보고6-1-3
제8조 검사용 기계·기구의 관리 ······6-1-3
제9조 지도 및 점검6-1-3
제10조 출장검사장 운영 등6-1-3
제11조 기술인력 관리6-1-4
제12조 기술인력 교육6-1-4
제13조 검사기술실무협의회6-1-4
제14조 수수료6-1-4
제15조 세부업무지침 등6-1-4
부 칙

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

2004. 1. 9 제정(규정 제653호)

2006. 5.26 개정(규정 제750호)

2007. 7.20 개정(규정 제799호)

2009. 3.30 개정(규정 제856호)

2011.12. 2 직제시행세칙 개정(규정 제946호)

2014.6.30 개정(규정제1026호)

2017.12.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1160호)

2019.6.4 개정(규정제1228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, 자동차종합검사, 이륜자동차정기검사,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, 튜닝승인, 택시미터사용검정, 운행차 소음의 개선결과 확인, 검사용 기계·기구의 관리 등 자동차검사업무(이하 "검사업무"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7.20, 2009.3.30., 2014.6.30., 2017.12.4., 2019.6.4.>

제2조(적용범위) 공단의 검사업무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9.3.30, 2014.6.30>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7.20, 2009.3.30>

- 1. "검사소장"이라 함은 검사소의 운영, 관리 및 자동차 검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를 말하다. <개정 2019.6.4.>
- 2. "출장검사장"이라 함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73조에 따른 "자동차검사 출장검사 장"과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제5조에 따른 "종합검사 출장검사장" 및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86조의3에 따른 "이륜자동차정기검사 출장검사장"을 말한다.<개정 2014.6.30., 2019.6.4.>
- 3. 삭제 <2009.3.30>
- 4. "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(이하 "통합전산망"이라 한다)"이라 함은 공단에서 설치·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.

제4조(검사업무 구분) ①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동차의 신규검사·정기검사·자동차종합검사·튜닝검사·임시검사·안전검사·수리검사·이륜자동차정기검사
- 2.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인정ㆍ명령ㆍ지움 및 표기
- 3.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

- 4. 택시미터사용검정
- 5. 운행차 소음의 개선결과 확인
- 6. 기타 검사와 관련된 업무
- ② 출장검사장에서 시행하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「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)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
- 2. 이륜자동차정기검사

[전문 개정 2019.6.4.]

- 제5조(검사업무 시행) ①검사업무는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장 등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시행한 기술인력은 검사표 등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통합전산망에 개인코드번호를 입력한 후 검사를 시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7.20>
 - ③통합전산망에 의해 전산처리되어 검사결과를 언제든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검사표 작성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07.7.20>
- **제6조(일일결산)** 검사소장은 검사업무 종료 후 검사접수 현황과 검사결과 현황을 대조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임시로 결산한 후 다음날 처리할 수 있다.
- 제7조(검사실적 보고) 검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등의 당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입력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7.7.20>
- 제8조(검사용 기계·기구의 관리) ①검사소장은 검사진로별 또는 기계·기구별로 관리책 임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인 점검·정비 및 유지·보수를 통하여 정확한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도 및 점검) 자동차검사본부장은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소와 출장검사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26., 2011.12.2., 2019.6.4.>
- 제10조(출장검사장의 운영 등) ①이사장은 자동차관리법령 또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26, 2009.3.30., 2014.6.30., 2019.6.4.>
 - ②이사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당해 소속 및 직원 소유차량을 검사 받기 위하여 자동차관 리법령 또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출장검사 시설·장비를 갖추고 출장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출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30>
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- ④지역본부장은 검사용 기계·기구의 고장 또는 검사소 이전 등으로 검사소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비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업무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2>
- ⑤ 이사장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86조의3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출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14.6.30., 2019.6.4.>
- 제11조(기술인력 관리) ①이사장은 기술인력의 검사업무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검사소장은 소속 기술인력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자격의 취득 또는 정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검사소장은 당해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검사업무 근무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30., 2019.6.4.>
 - ④검사소장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소음방지 장구 등의 안전보호장구 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12조(기술인력 교육) ①이사장은 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을 임용한 때에는 관련법령(고시를 포함한다)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이사장은 기술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에는 공단 직원외의 자를 포함할 수 있다.
- 제13조(검사기술실무협의회) ①검사업무의 표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술실무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위원장은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, 위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④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(수수료)** 검사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5조(세부업무지침 등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제정 2004.1.9>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 규정 제정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06.5.26>

이 규정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7.7.20>

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3.30>

이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12.2>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6.30>

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12.4., 제규정관리규정 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.)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 공단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부 칙 <2019.6.4.>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